

# 육아정책 Brief

통권 제65호 | 발행인 : 백선희 | 발행일 : 2018년 2월 10일 | 발행처 : 육아정책연구소

##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성공 조건은? 부모 체감에 기반해야

### I. 문재인 정부 보육정책의 본격적 시동과 성공적 추진의 전제조건

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27일 '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'을 발표함.

- 2017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는 '보육·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'를 실현하기 위한 '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(2018-2022)(이하 '제3차 기본계획')'을 발표함.<sup>1)2)</sup>
  - ▶ '제3차 기본계획'은 문재인 정부의 보육 비전을 반영, 향후 5년간(2018-2022)의 보육정책 방향성을 좌우하는 중요성을 지님.
  - ▶ '제3차 기본계획'에서는 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향상 관련 4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함.
  - ▶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, ② 보육체계 개편, ③ 보육서비스 품질향상, ④ 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4개 분야에 대해, 주요 과제는 '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% 확대', '표준보육시간 제도'도입 등 '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선 추진', '표준보육비용 재계측을 통한 적정 보육료 지원 기반 구축', '보육교사 자격 개편(1·2급 중심 개편 등)', '시간제보육반 제공 확대'를 골자로 함.
- 의욕적인 발걸음을 내딛은 '제3차 기본계획'의 성공과 문재인 정부의 보육 비전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간 구체적 실행 방안과 보완이 필요함.
  - ▶ 구체적 실행 방안과 보완은 부모들이 체감하는 보육 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음.
  - ▶ 또한 정책 수요자인 부모들이 체감하는 보육현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, '제3차 기본계획'에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과 보완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※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『2018-2022 보육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(이정원·이윤진·김희수, 2017)』의 일부를 수정·보완하여 작성한 것임.  
1)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2017. 12. 27). '보육·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'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(2018-2022) 발표.  
2)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, 2006년부터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을 수립, 발표하여 옴.



## II. 실행 과제의 조기 확정과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 필요

‘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’ 중 검토 중인 실행 과제에 대한 조속 확정과 이행방안 구체화 필요

- 4개 분야 17개 과제와 관련한 세부추진과제 중 ‘검토’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검토를 통해 조속히 추진 여부를 확정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함.
- **표준보육시간 확정과 실행 계획 마련**
  - ▶ ‘제3차 기본계획’에서는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‘**표준보육시간**’ 제도를 도입, 주양육자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.
  - ▶ 이는 무상보육 확대에서 나타났던 부작용 해소와 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 이용 보장의 측면에서 기대되는 제도이나, 적절한 표준보육시간 설정, 표준보육시간 외 보육 서비스 이용 비용 책정 및 지원체계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.
- **실태조사 시행 등 장애아보육지원 개선을 위한 이행 방안 마련**
  - ▶ ‘제2차 기본계획’의 세부과제로 추진되었던 ‘장애아·다문화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기반 마련’의 달성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.<sup>3)</sup>
  - ▶ ‘제3차 기본계획’에서는 장애아·다문화아동의 지원방안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채 검토 중임.
  - ▶ 장애아를 위한 통합 보육은 제도적 발전이 시급한 시점이나, 어린이집에 채용하는 장애영유아의 규모조차 정확히 산출하지 못하는 등 제도 발전의 근간이 미흡함.
- **어린이집 중간관리직 신설을 통한 보육교직원 자격체계 마련**
  - ▶ ‘보육의 공공성 강화’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어린이집에 유치원의 원감과 같은 ‘중간관리직 신설’ 검토 계획을 발표함.
  - ▶ 어린이집의 운영 건전성 제고와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원장 및 교사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함.<sup>4)</sup> 보육교사 1급에서 원장으로의 승급 이전 **교수학습 리더(pedagogical leader)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관리직 신설**을 조속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함.

## III.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공을 위한 보완 사항

부모의 보육 현실 체감과 요구를 반영한 추진과제 보완이 필요함.

- ‘제2차 기본계획’ 추진 성과에 대한 부모의 보육 현실 체감도<sup>5)</sup>를 살펴봄으로써 ‘제3차 기본계획’에서 고려해야 할 추가 보완 사항을 확인함.
-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 부모들은 ‘제2차 기본계획’을 통한 보육 환경의 개선 목표를 ‘보통’ 이하로 달성한 것으로 체감함.

3) 이정원·이윤진·김희수(2017). 2018-2022 보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. 육아정책연구소.

4) 최윤경·박진아·조현수·이슬미(2017). 누리과정 성과제고를 위한 교사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. 육아정책연구소.

5)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「2018-2022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(이정원·이윤진·김희수, 2017)」에서는 어린이집 재원 자녀가 있는 부모 699명을 대상으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를 조사함.

- ▶ ‘6대 추진과제’에 대한 부모 체감도는 평균적으로 ‘보통’에 미치지 못하며(5점 만점 중 평균 2.92점), ‘부모 보육양육부담 경감’의 달성 체감도가 가장 높으나 이 또한 ‘보통’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음(평균 3.14점).



[그림 1]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현실 체감도

자료: 이정원 외(2017). 2018-2022 보육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. pp. 117-118 <표 Ⅲ-4-1> 재구성

- ▶ ‘제2차 기본계획’에서 상대적으로 달성도가 높게 평가되나 여전히 부모 체감이 충분치 않은 ‘부모의 보육·양육부담 경감’은 ‘제3차 기본계획’에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. 동시에 ‘제3차 기본계획’에서 다소 미약한 보육 실수요자에 대한 보육지원 기조도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음.

#### ● 어린이집 추가 경비 부담 경감 대책 지속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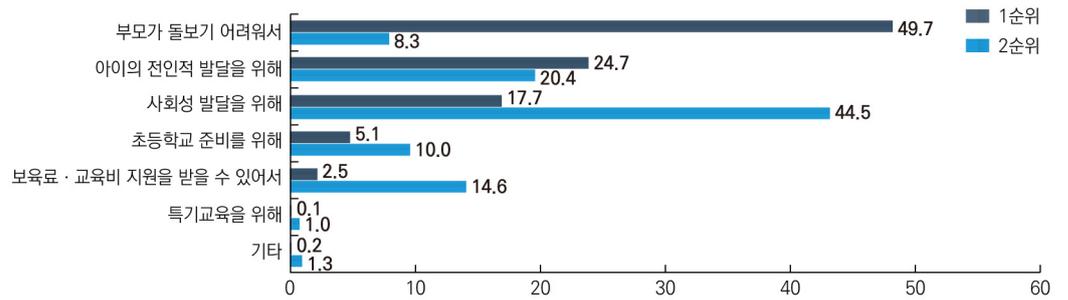
- ▶ ‘제2차 기본계획’에서 ‘보육·양육부담 경감’의 부모 체감도는 보육료 부담 경감에 주로 한정되는 한계를 보이며,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경비 부담은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는 응답이 39.7%로 이에 대한 경감 대책 추진은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#### ● ‘표준보육시간’ 제도 도입에 따른 맞벌이 가구 보육지원 보완 필요

- ▶ ‘제3차 기본계획’ 내 ‘보육체계 개편안’은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‘표준보육시간 제도’를 도입, 표준보육시간에 대해서는 부모 취업 여부 등 자격 구분 없이 무상으로 보장함을 기본으로 함.<sup>6)</sup>
- ▶ 그러나 외벌이 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에 대해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우대한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이용 부모의 만족도 조사 결과,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보다 만족한다는 응답(만족함 + 매우 만족함)이 38.7%로 높았음<sup>7)</sup>을 고려해야 함.
- ▶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‘부모가 돌보기 어려워’임을 고려할 때 맞벌이 가구 등 보육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강조될 필요가 있음.

6)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2017. 12. 27). ‘보육·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’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(2018-2022) 발표.

7)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.9%(전혀 만족하지 않음 4.1%+만족스럽지 않음 14.8%)로 나타남.



[그림 2] 어린이집 이용 이유

자료: 이정원 외(2017). 2018-2022 보육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. p. 163 <표 IV-2-18> 재구성

- ▶ 보육체계 개편안이 맞벌이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임.

#### IV.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공을 위한 제언

- 어린이집 이용 비용 부담 경감 대책 지속
  - ▶ ‘표준보육시간’ 제도 도입을 고려하여 영유아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적정선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.
  - ▶ 어린이집의 장시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게는 보육료 외 기타 추가경비 뿐 아니라 표준보육시간 외 유상으로 이용해야 하는 추가 보육시간에 대한 보육료 부담도 증가할 여지가 있음.
  - ▶ 적절한 시간의 표준보육시간 산정 및 표준보육시간 외 추가 이용 시간에 대해 소득 기준과 보육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구의 자격 기준(예: 맞벌이 등)을 동시에 고려한 추가보육료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.
- 맞벌이 가구 등 보육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구 지원 대책 보완
  - ▶ 표준보육시간 도입 시 맞벌이 가구와 같은 장시간 보육 수요자가 보육서비스 이용에 확대받지 않는 적절한 수준의 표준보육시간 설정 및 맞벌이 가구 아동 보육에 따른 인센티브 설계(추가 보육시간에 대한 보육료 수준 제고, 평가인증 가산점 제공 등)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.
- 장애아 통합보육지원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
  - ▶ 질 높은 통합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적인 ‘장애아보육 실태조사’를 실시, 현실 진단과 구체적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.
- 어린이집 중간관리직 도입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
  - ▶ 어린이집 중간관리직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, 제도 도입에 앞서 중간관리직의 역할, 도입이 적절한 시설 규모, 승급 요건과 방법, 급여·수당 등의 처우 등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함.

이정원 연구위원 dian74@kicce.re.kr